

	사회봉사단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20. 5. 7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단(이하 “봉사단”이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사회봉사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산학처에 둔다.

② 사회봉사단에는 단장을 둔다.

③ 기획산학처는 사회봉사단 업무를 지원한다.

④ 봉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) ① 봉사단의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본교 교원으로 한다.

② 단장은 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.

③ 봉사단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기획산학처의 직원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.

제4조(업무)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사회봉사 활동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

② 사회봉사 기관 선정

③ 사회봉사활동 교육 및 관리

④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 활동

⑤ 사회봉사활동 등록 및 실적 관리

⑥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지원

⑦ 기타 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봉사활동계획서)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회봉사활동 실시계획서를 사회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봉사활동확인서) 봉사활동을 마친 개인 및 단체는 1주일 이내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회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회봉사 교과목)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대학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항목은 시행세칙에 두도록 한다.

③ 봉사활동 기간은 각 학기 내에 소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교내봉사 이외에 외부기관 봉사를 진행할 경우 봉사단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참여하여 사회봉사 실적 인정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한다.

제8조(사회봉사기관의 선정) ① 사회봉사기간으로는 순수 비영리 복지 기관 및 단체(1365자원봉사포털, 사회복지자원 봉사인증관리(VMS)기관 혹은 교육부 지정기관(한국장학재단)이 인증한 대학생의 교육기부활동(무료봉사)

② 대학 주최 및 주관한 봉사 프로그램 참가자로 총장이 선정하여 추천한 봉사활동

③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

④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1. 각종 종교,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

2.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